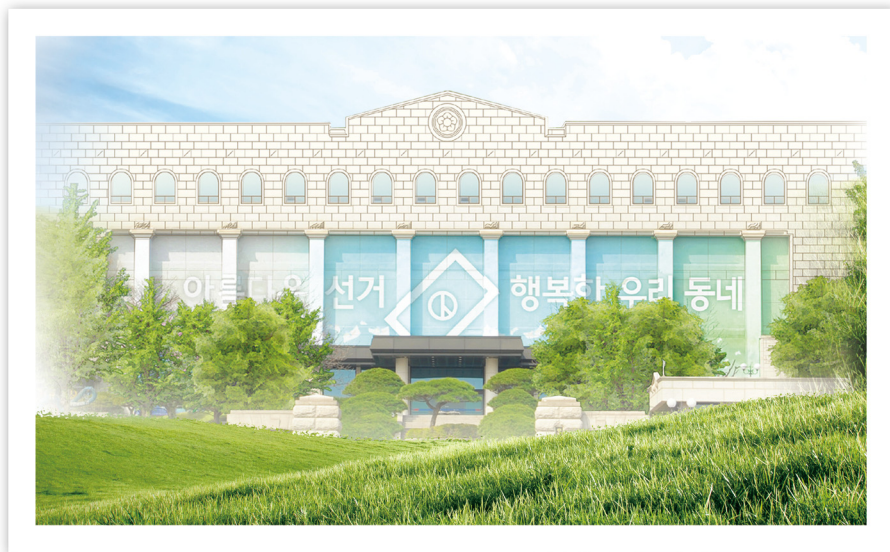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

I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1

1. 관계 법규	3
①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3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	4
2.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4
① 적용범위	4
② 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의 관계	5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6
④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6
3. 사례예시	7
① 교양·교육강좌	7
② 문화·예술행사	8
③ 체육행사	10
④ 각종 기념일 행사	11
⑤ 민원상담	14
⑥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15
⑦ 준공식·개통식 등	16
⑧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17
⑨ 기타 행사	18

II

홍보물 발행행위

19

1. 관계 법규	21
① 법 제86조제5항	21
② 규칙 제47조제4항	22
2. 법 제86조제5항 운용기준	22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22
②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22
③ 1종 1회의 개념	23
④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24
3. 사례예시	24
① 인쇄물·간행물	24
② 영상물	28
③ 시설물	29
④ 신문·방송광고	30
⑤ 인터뷰 등 방송출연	30
⑥ 인터넷 홈페이지	31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33

1. 관계 법규	35
① 법 제86조제2항	35
② 법 제86조제6항	35
③ 규칙 제47조제5항	36
2.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운용기준	37
①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37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37
③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의 범위	38
3. 사례예시	39
①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39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40
③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	41

IV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43

1. 관계 법규(법 제86조제7항)	45
2. 법 제86조제7항 운용기준	45
① 입법취지	45
② 법 제86조제5항과의 관계	45
③ 법 제86조제7항의 적용범위	46

3. 사례예시	47
① 인쇄물·간행물	47
② 영상물	47
③ 시설물	48
④ 신문·방송광고	48
⑤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49

V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51**

1. 관계 법규	53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53
② 법 제112조제4항	54
2.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운용기준	55
①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55
②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56
③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운용	57
④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부상의 구분에 관한 운용	57
3. 사례예시	58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9
① 보조금 지급	59
② 금품제공행위	60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64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66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67
① 행사관련 금품제공행위	67
② 각종 시상·포상·표창	70
③ 의연금품·위문품 등 제공	74
④ 수당·실비 제공	76
⑤ 여행·견학경비 지원	77
⑥ 축·부의금 제공 등	79
⑦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80
⑧ 각종 공모	81

VI

부 록

83

1. 관련 법규정 등	85
① 공직선거법	85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95
③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98
2.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105



Ⅰ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I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1. 관계 법규

1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공직선거법」은 이하 ‘법’이라 함)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법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의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하 ‘규칙’이라 함)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2.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1 적용범위

(1) 금지 주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협의회의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금지 기간

선거일 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이하 ‘선거일 전 60일 이후’라고 함)

(3) 금지 대상 선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됨.

(4) 금지 내용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됨.

(5) 보궐선거등에서의 제한 범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보궐선거등이 실시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 당해 선거구 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음.

(6) 명칭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함.

2 ▶ 법 제112조제2항제4호와의 관계

- (1)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각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즉, 행사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의 금품제공(표창·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함.

- (2)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 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사 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도 되는 것으로 보아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제4호 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음.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 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는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전례적인 고유축제’로 볼 수 있음.

- (2)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예술단의 공연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시책 기본지침(이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이라 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음.

4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 (1)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등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2)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일 전 60일 이후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3. 사례예시

1 교양·교육강좌

(1)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2)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이므로 가능함.

(3) 건강교실·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는 행사이므로 가능함.

(4)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됨.

(5) 소상공인 창업강좌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예비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창업교육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할 수 있음.

(6) 성인 대상 한글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 교육으로서 문해교육(한글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9조(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7) 제한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계속반 신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 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8)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교양강좌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함.

2 문화·예술행사

(1) 무료영화 상영 및 무료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2) 지역문화제·지역축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3)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후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 개최하는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등 보조금 지급 근거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시행계획 등 행사 후원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함.

(4)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위문공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함.

(5) 구·시·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예술행사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음.



3 체육행사

(1)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후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기념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2) 걷기대회·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3)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체육관리지침」·「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가능함.

생활체육협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회명칭이나 우승기·우승배에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됨.

생활체육협회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생활체육협의회가 정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4)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인천광역시가 2014년도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2항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함.

(5) 교육청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전 개최

교육청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예선전을 개최하는 것은 대회일정상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될 것이므로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후원할 수 있음.

(6) 종목별 선수권대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전국공도종별선수권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그 행사가 개최되는 때에도 가능함.

4 ▶ 각종 기념일 행사

(1) 식목일(4. 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갓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2)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방위협의회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친수(親授)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3) 장애인의 날(4. 20.)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부상 제외)을 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동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4) 근로자의 날(5. 1.)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동 행사는 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의한 행사(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개최되는 동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음.

(5) 어린이날(5. 5.), 어린이주간(5. 1.~5. 7.)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모범 어린이를 시상(부상 제외)하거나 소년·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6) 어버이 날(5. 8.), 노인의 날(10. 2.), 경로의 달(매년 10월)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의하여 상시 개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에서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한편,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소외계층 노인에게 카네이션과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및 민간단체의 기념품 등의 제공은 어린이 날 등과 동일함.

(7) 향교의 석전행사

전국 230여개 향교가 5월(중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 여러 나라와 날짜를 통일함)에 개최하는 석전행사(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4성 10철 72현을 제사 지내는 의식)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8) 소방의 날(11. 9.)

중앙행정기관이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기본계획」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협조사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 및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명의를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동 행사에 참석한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9) 4·19 민주혁명 50주년

사단법인 4월회(행정자치부 등록단체)가 2010년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로 다양한 기념행사(4·19기념 학술대회, 4·19 음악제, 4·19기념 조형물 제막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나 물품의 지원없이 명칭후원(포스터, 초청장 등에 사용)만을 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함.

(10) 환경의 날(6. 5.)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가 개최하는 환경의 날 기념 미술작품 공모전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명칭후원을 할 수 있음.

5 민원상담

(1)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2) 조례에 근거한 생활법률상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을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3) 민원상담 장소제공행위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4) 이동민원실·직소민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5)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민원청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자신에 대한 선전이나 업적홍보 없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6 ▶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1) 사업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홍보물·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집단민원·긴급민원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의 제공은 가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며, 홍보물 배부는 법 제86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규정에 따라 제한됨.



(2) 주민예산설명회 개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참석한 주민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그 절차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동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4호에 위반됨.

(3)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표 간담회·직능단체모임 또는 민방위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85①)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법 §86①1.)에 해당되고,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가 금지되는 사업설명회에 해당될 수 있음.

주민대표 간담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7 ▶ 준공식·개통식 등

(1) 도로준공식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음.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됨.

(3) 기공식 개최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8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8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 (1)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선거일 전 60일 이후)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 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2)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3) 즉,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 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특정 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4) 기후변화주간 행사 후원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시달하는 ‘제2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추진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가능함.

9 ▶ 기타 행사

(1) 농산물박람회 개최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가능함.

(2) 관할구역 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한류활성화를 통한 한류상품 수출확대 및 아시아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주최로 코엑스(서울)에서 한류문화상품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3)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전적지 순례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함.



II

홍보물 발행행위



II

홍보물 발행행위

1. 관계 법규

1 법 제86조제5항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2 규칙 제47조제4항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2. 법 제86조제5항 운용기준

1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됨.

2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1) 홍보지역에 따른 적용범위

- 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배부·방송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을 설치·배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됨.
- 관광객 유치·투자촉진 등 그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자인 경우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2) 홍보내용에 따른 적용범위

-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은 인쇄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제7호의 홍보물은 직명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에는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동사무소·사업소·도서관 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는 규칙 제47조제4항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청사에 포함됨.

3 ▶ 1종 1회의 개념

- 법 제86조제5항의 홍보물의 종수의 산정시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규격·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함.
- 횟수 산정시 “1회”란 홍보매체별로,
 -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을 말하고,



-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대에 1회 방영하는 것'을 말하고,
-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 신문·방송에 광고하는 경우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 및 제70조(방송광고)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한 1회'를 말함.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법 제86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그 홍보물에 법 제8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게재하거나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3. 사례예시

1 인쇄물·간행물

(1) 지방자치단체 개최 행사안내서·민원안내서·반상회보·관광안내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성명 등을 게재하는 행위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홍보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할 수 없고, 동규정 제7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게시하는 홍보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도 게재할 수 없으나, 이를 게재하면 법 제86조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에 포함되는 홍보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개최하는 행사 안내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외에 성명·사진이 포함된 인사문 게재시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함.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고 그 기관이 시달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거나,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직·성명 또는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포함한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지역 내의 기관·단체의 간행물 또는 문화·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이하 '선거일 전 180일'이라 함) 전에 단체의 회원에게 배부되는 간행물에 의례적인 인사문(직명·성명·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배부되는 해당 간행물에 인사문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93조에 위반됨.
-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직·성명(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어 글씨를 게재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180일 전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면서 직·성명 또는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을 고려하여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사인 경우에는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보자인 경우 포함)이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행하는 의례적인 축사는 그 행사의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이 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 행사 협조자에 대한 감사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통상의 소형 사진 포함)의 의례적인 감사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행사 종료와 발송시기의 시간적 간격이 현저히 크거나 발송대상·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93조에 위반됨.



(4)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성년축하 서한

지방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지역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단순히 성년 됨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5) 백서발간·배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것은 가능함.

(6) 반사회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사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가능함.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93조에 위반됨.

(7)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의 앞면에 “○○군수 직인”으로 직명과 직인을 명기하여 발행하는 것은 가능함.

(8) 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홍보 서한문 발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9) 통·반장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배부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10)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품질보고서」에 인사말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에 따라 발간·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의례적인 업무행위로서 가능함. 다만, 발행횟수·내용 등이 통상적인 보고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1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홍보자료 배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가능함.

(12)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서한문 발송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집단행동, 소송, 물리적 방해 등 주민과 오랜 갈등을 겪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민설득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 게재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가능함.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연하장 발송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진과 직명·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협조해 준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 직능 및 사회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직무상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14)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임인사장 발송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에 즈음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거나, 시·구정에 협조해 준 시·구·동의 유관단체장, 통·리·반장에게 의례적인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2 영상물

(1) 버스에 LCD 모니터를 장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방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방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2)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연합 뉴스에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방송에 해당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방영할 수 없음.

(3) 사업설명회에서 프레젠테이션용 자료 사용

시정현안사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설명회나 연두·초도순시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부수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용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참석자에게 사업계획 등을 구두로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보아 법 제86조제5항에서 금지하는 녹음물·녹화물 등의 홍보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됨.

3 시설물

(1)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탑

지방자치단체가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 내장산 자락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할구역안의 고속도로변에 홍보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2) 경전철 홍보관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성을 알리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 홍보관(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 경전철관으로 구성)을 설치하거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영상물 상영 또는 팸플릿 등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홍보영상물 또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상영·배부 하는 것은 금지됨.

(3) 지방자치단체의 수상경력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단순한 수상 내용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외벽면 또는 담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4) 명절 현수막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 가능
-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에 게시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경우(3기 연임 등)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거리에 게시 가능

4 ▶ 신문·방송광고

(1)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송 또는 신문을 이용한 광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관광객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송·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신문광고

황토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범위 안에서 가능함. 다만, 그 광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3) 지방자치단체장의 외국신문 광고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이후에 해당 신문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5 ▶ 인터뷰 등 방송출연

(1)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장이 TV·신문·잡지·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동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위반됨.

(2) 열린음악회 출연

열린음악회 방송 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인사말)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6 인터넷 홈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게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 활동상황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 동영상물 등 게시

■ 초기화면

초기화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팝업창에 사진을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법 §85①) 또는 업적홍보(법 §86①1.)에 해당되어 금지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이나 SNS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홈페이지 내 특정 메뉴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 메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성명·사진 포함)·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게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적이 게재된 경우 그 내용과 게시 경위·위치·방법 등을 종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1항제1호에 위반됨.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또는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법 제86조제5항 각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행·배부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3) IPTV를 통한 홍보영상물 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IPTV의 시정안내 채널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두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됨.

(4) 홍보영상물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방송

IPTV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지 않음.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1. 관계 법규

1 ▶ 법 제86조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법 제86조제6항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규칙 제47조제5항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상기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상공회의소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하는 특수법인에 해당하고, 「상공회의소법」 제1조(목적) 및 제4조(설립목적)에서 공적 목적을 적시하며, 제54조(보조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공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규칙 제47조제5항제10호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2.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운용기준

1 ▶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당내경선 후보자(예비후보자 아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인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등 방문 가능

🗨 할 수 있는 행위

- 창당·합당·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참석(근무시간 중 가능)
-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
(근무시간 중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등 방문

2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의 범위

(1) 연가기간 중 또는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 참석

연가기간(반가 포함)과 점심시간은 법 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 행사

법 제86조제6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근무 시간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됨.

(3)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 행사

법 제86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지위를 가지고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 참석을 금지함.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3. 사례예시

1 ▶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 가능한 경우

(1)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 가능함.

(2)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으나, 지지연설은 할 수 없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4)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5) 근무시간 중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 제한되는 경우

(1)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 돕기·일일찾집 행사 등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는 참석할 수 없음.

(2)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1)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창립기념행사 참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검찰청 환경보호위원협의회(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함.

(2)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석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개최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가능함.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회원은 국무총리,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서 규칙 제47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함.

(3)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도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함.

3 ▶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 행사

(1) 지각·외출·조퇴 중 사적 행사 참석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할 수 없음.

(2) 공공기관의 내부 행사 참석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할 것이나, 공공기관의 직원 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IV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IV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1. 관계 법규(법 제86조제7항)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2. 법 제86조제7항 운용기준

1 ▶ 입법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선거 운동의 효과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상시 제한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 법 제86조제5항과의 관계

-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신문·잡지·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매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되,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7항에 따른 광고출연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그 인쇄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 공익적 사항을 홍보하는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나 광고에



이르는 내용인 때에는 1종 1회 홍보물에 포함됨은 물론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1항 및 제7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봄.

■ 법 제86조제5항에 위반되거나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광고 출연하면 법 제86조제7항을 적용 받음.

3 ▶ 법 제86조제7항의 적용범위

(1) 광고주체에 따른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등에 따라 법인·단체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 그 법인·단체를 위하여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

(2) 광고대상(지역)에 따른 적용범위

선거구 외의 광고 또는 전국단위의 광고 등 홍보지역 범위와 무관하게 동 규정이 적용됨.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되지 아니함.

(3) 광고방법에 따른 적용범위

방송·신문·잡지, 시설물,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모바일, 트위터·페이스북, 녹음·녹화물, 홍보용품 등 특정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물은 모두 해당됨.

3. 사례예시

1 ▶ 인쇄물·간행물

(1) 지방 특산물 홍보 전단지에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특산물 홍보를 위해 선거구 밖에만 배부되는 ○○마트 홍보 전단지에 출연하는 것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노사정위원회 포스터 모델 출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사정위원회 홍보 포스터에 모델로 출연하는 것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 영상물

(1)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고유축제·투자유치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특산물·고유축제·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한국고속철도(KTX) 및 공항철도 열차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나,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할 수 없음.

(2)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동영상 출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제공하는 홍보동영상에 인천광역시장이 출연하는 것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3) 4대 사회악 척결 홍보 동영상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에 출연하는 것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3 시설물

(1)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설물 광고에 출연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에 지방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설치하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전광판 광고에 출연

지역축제 홍보를 위하여 상영하는 전광판 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광판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4 신문·방송광고

(1) 상품광고 및 공익광고 출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광고 및 공익광고를 위해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육성광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육성으로 각종 행사등을 소개하는 녹음·녹화물을 제작하여 TV·라디오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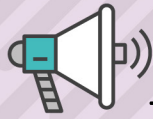
5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1)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광고

지방자치단체가 포털, 언론매체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홍보하는 배너·동영상을 광고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2) 소셜미디어·모바일앱 광고

트위터·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모바일앱의 특정 광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V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V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1. 관계 법규

1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료(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2 법 제112조제4항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2.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운용기준

1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1) 법령·조례에 따라 확대 변경하는 등의 행위

법령·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행위와 조례에 따른 행위간 차이가 없음.

(2) 법령·조례에 따르지 아니한 직무상의 행위인 경우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구호·자선행위)·라목(초도·연두순시)·마목(긴급현안)·바목(위문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 제공할 수도 없음. 이 경우 확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추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마목)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직무행위는 종전의 범위로 보아야 함.

(3)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열거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현재 참석하고 있는 장소 또는 행사에서 제공하더라도 일응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추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사의 성격, 금품의 종류·가액, 제공 동기와 방법, 관행, 발언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4) 그 밖의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개정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직접 수여할 수 있음.

2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1)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통할·관리·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표시되므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됨.

(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과 “**1**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3)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법」 제6장에 규정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봄.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공사, 지방공단, 도립·시립대학 등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시·군장)의 행위로 보지 아니함.

3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운용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함. 예컨대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의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려면 별도로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 (2)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부상의 구분에 관한 운용

- (1) 법령·조례에 따른 표창·포상의 경우 부상 수여는 금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기하여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금품제공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일정한 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표창·포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금품을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제공하여야 함.
- (2)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 행위(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참여자 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일촌평, 답글 달기, 사진 올리기, UCC 올리기 등)
 - 추천을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착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일정한 기준에 의하되, 그 기준에 도달한 자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가입, 로그인, 10회 이상 방문, 글·사진 등 게시자, 설문조사 응답자 등)
 - 행정목적 기여에 대한 대가 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정보 등의 오류를 수정한데 대한 대가제공 등)



(3) 조례에 따른 표창·포상 행위(부상 수여 금지)

- 일정한 요건과 심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보화 경진대회, 디카 사진 콘테스트, UCC 콘테스트, 보물찾기, 사이버 정책토론포럼 우수토론자 보상, 환경순찰 모니터제 우수 참여자 보상 등)
- 포상의 형식이라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공모의 성격이라면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볼 수 있음

3. 사례예시

아래의 사례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1 보조금 지급

(1) 법령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동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및 동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함.

(2) 사적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행사가 아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모임 등의 사적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사적 행사라도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사의 내용이 그 시책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인대회·시군체육대회·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행사 보조금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가능하나, 동 보조금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

(4)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전진대회 행사에 보조금 교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됨.

(5)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6)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함.

2 ▶ 금품제공행위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서예비엔날레 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가능함.

(2) 경로당에 명절 선물 등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제2항·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함.

-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함.
- 다만,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 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 제공행위, 생일선물 제공행위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봄.

연초 사업계획에 없거나 조례로 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물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3) 공공근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미화사업 등을 하는 행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없이 순수하게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내·외부를 청소하거나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제20조(자활근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에 따른 행위로서 가능함.

(4) 지역자율방재단에 모자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모자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예산 지원)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5) 마을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 마을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6) 청사이전에 따른 소속공무원 이전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7) 청사이전에 따른 소속공무원 주택마련자금 이자보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직장협회가 문서로 합의한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함.

(8)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제3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무원제안규칙에 따라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9)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순국선열의 날·설·추석에 농수산상품권·생활용품 등의 위문금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따라 가능함.

(10) 벽지지역 통학버스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벽지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국가의 임무)·「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학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로 보아 가능함.

(11)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따라 어린이 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그 가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12) 공영유료주차장의 무료주차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유료주차장을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13) 무주택 독거노인에 대한 주택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의한 주거급여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가능할 것이나, 같은 법에서 정한 급여의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 제114조에 위반됨.

(14) 근거리 무선망(Wi-Fi)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제31조(정보격차해소시책의 마련) 등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Wi-Fi)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가능함.

(15) 도로명주소 홍보용 문패 보급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문패를 달아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및 「구례군 도로명주소 조례」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공행위로서 가능함.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1)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지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체험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수립·시달된 정부의 기본시책과 「국가의제21」이라는 실천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경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일반선거구민에게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거나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제114조에 위반됨.

(3) 안전문화 홍보물품 등 배부

중앙행정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하거나 캠페인 참가자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4)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달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함.

(5)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6) 학생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에게 음식물·기념품·경품제공

주민자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위반됨.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행사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참석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농촌일손돕기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8)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환경부가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기본시책 또는 그 기본시책의 일환으로 시달하는 공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9) 국립중앙극장의 문화체험행사 참석 주민에게 차량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개최하는 국립중앙극장의 지역주민 대상 문화체험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국고보조 등)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10)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 등 제공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 경우 동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주민에게 식재작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 제112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개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가능함.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1)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상시 금지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청사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당해 지방의회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만, 지방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2) 인터넷홈페이지 이벤트 및 퀴즈 당첨자 경품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벤트 및 퀴즈행사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3) 광역단체의 조례에 의한 기초단체의 장수노인 금품지급행위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관내 시·군이 장수어르신 지원금품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지원금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함.

※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은 2008. 2. 11. 폐지되었음.

(4)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5)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생아·전입세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1 행사관련 금품제공행위

(1) 자원봉사자 교육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의 교통편의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서 가능함. 다만,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교통편의나 숙식제공이 필요한 정도의 행사성 교육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됨.

(2) 엑스포 행사장 운영인력 교육시 식사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장 운영인력(도우미, 자원봉사자)을 대상으로 발대식·교육을 실시하면서 발대식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비·숙식비를 제공하거나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가능함.

(3) 행사진행요원에게 일회용 우의 또는 근무복 제공

강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진행요원에게 우의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 공무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가능함.

(4) 음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수돗물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개최하는 태교음악회에 참석한 임산부 등에게 홍보용 수돗물을 제공하거나, 민간단체로부터 협찬받은 우유·방석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협찬사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5) 연축제 참가자에게 연만들기 재료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참가자에 대하여 무료로 연만들기 재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민간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연만들기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6) 지방자치단체장 이임식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임식에 참석한 초청인사에게 오찬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7)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무원에게 식사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소속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한 소속 사회복지무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쌀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8) 사회단체가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나,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

(9)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각각 주최·주관인 행사에서 사회단체가 그 비용과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해당됨.

(10) 지방문화원의 양로연의에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이 ‘양로연의’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11) 서울메트로(지방공사)의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기념 기념승차권 제공

서울메트로가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에 대한 직원위로 및 이용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승차권 30,000매를 발행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12) 세금 캐시백(cashback) 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으로 납세 고지를 받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개인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캐시백(cashback)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달력 배부

지방자치단체가 달력을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유하는 공공기관·시설에 배부·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구 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시 꽃다발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정기표창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꽃다발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4조 등에 위반됨.



2 각종 시상·포상·표창

(1)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포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공자를 표창·포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제2항 제4호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직·성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음.

(2) 조례에 의한 포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직·성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3)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래와 같은 포상조례에 따라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투자유치 성공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아파트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것은 법 제114조에 위반됨.

(5)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의 시상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행사'라 함은 해당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를 말하므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 행사(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함)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백일장, 대학생 음악콩쿠르, 주부대상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음.
-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운용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을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장의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의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등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 시상하는 것은 금지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7) 각급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입학식·졸업식에서의 시상

경기도 산하 부설교육기관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아카데미의 입학식·졸업식에 도지사상과 시장상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3조에 위반됨.

(8)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시 유공자 시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9)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대회 시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10)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11)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시 소속직원의 범위

자치구·시·군의 장이 포상하는 경우 읍·면·동 직원, 시·도지사가 포상하는 경우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직원은 소속 직원에 해당됨.

(12)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부서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직무수행 우수 부서(읍·면·동사무소 포함)를 선정하여 포상해 온 종전의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포상금(상장 포함)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13) 금지되는 부상의 형태

해외연수, 특별휴가, 포상금, 상품권, 장학금 등은 금지되는 부상에 해당됨.

(14) 사회복지무요원 포상시 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사회복지무요원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표창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지무요원의 휴가) 및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5조(특별휴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함.

(15)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포상 전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부상 포함)을 전수하는 것은 가능함.

(16) 지방의회의장의 유공시민 포상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부상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17)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시 제3자의 부상 수여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법 제115조에 위반되며, 표창·포상자가 상금 수여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통모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18)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시 상장의 형태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도자기 상패는 상장으로 볼 수 없음.



(19)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체육회 명의의 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행사시 체육회의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됨.

3 의연금품·위문품 등 제공

(1) 국군장병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군·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가능함.

(2)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3)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서 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구호·자선행동을 하는 경우 등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하면서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봄.

(4) 노숙인 저축왕 선발 상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노숙인의 자활을 위하여 저축왕을 선발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서 가능함.

(5) 무료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 대상 열차탑승체험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무료양로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화성열차 탑승체험·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서 가능함.

(6)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중상이·저소득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추석·연말 또는 관련 기념일(아버지 날·노인의 날·어린이 날·보훈의 달 등)을 맞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서 가능함.

중상이·저소득 국가 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설·추석·연말·보훈의 달에 위문품을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상시 가능할 것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7)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설립허가 여부를 불문함)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4 ▶ 수당·실비 제공

(1) 통·리·반의 장에게 수당 기타 실비를 제공하는 행위

통·리·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의 장에 대한 수당 기타 실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라기 보다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능함.

(2) 통·리·반의 장에게 신문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여금·수당·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통·리·반의 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3) 자치행정 자문요원 등에게 수당 기타 실비를 보상하는 행위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위촉된 자문교수단·모니터요원 등에 대한 회의개최시 수당 기타 식사·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개최에 수반된 행위로서 가능함.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여비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임원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5)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여비지급

전국 또는 시·도단위 체육대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관용차량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른 격려금품의 제공으로 보아 가능함.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착오(세울·과표 오류적용, 착오부과 등)로 인해 행정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적정한 보상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가능함.

5 여행·견학경비 지원

(1) 소속 공무원 등의 해외 배낭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소속 공무원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에 따라 배낭여행 등 공무원 해외여행시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비 보상적 행위로서 일방적 금품제공행위로 볼 수 없어 가능함.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개정(2009. 2.) 및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공로연수) 개선 통보」(2009. 2. 4.)·「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관련 협조」(2009. 5. 3.)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자에 대한 해외시찰 경비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근거가 없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소속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해외시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함.

(2) 청소업무담당공무원·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에 대하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 준수) 및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선정 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하는 행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주변영향지역(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간접영향권을 말함)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하는 경우 그 견학이 주민설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가능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동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선진시설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주변영향지역 외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4) 외국인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에 항공료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하여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5) 한인회 주관 불우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지원

한인회가 저소득 불우 모범청소년에게 선진문화를 접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저소득 불우 모범청소년 미국 견학」에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또는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6)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자원봉사자 공로연수 실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 및 자원봉사주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로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함.

6 축·부의금 제공 등

(1)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및 화환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명의(직·성명)로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축·부의금 제공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법 제112조 제2항제2호 아목의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

(3)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소속직원에게 축·부의금 제공

법 제112조제2항제2호 아목에 의한 소속 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청 소속의 상근직원을 말함. 따라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의 상근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건소 소속직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사무처·보건소 소속 상근직원의 부상·사망시 위로금품 지급은 법 제112조제2항 제4호가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4)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경조사에 하객이나 조객(법 제113조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자를 제외함)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 안의 축·부의금품을 받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5)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 관련 청첩장 발송 및 신문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신문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알림란을 통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6) 지방의회의장 등 취임 축하 화분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의한 행위로서 가능할 것이나, 그 밖의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7) 경로당·마을회관 개소식 기념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경로당·마을회관은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의 개소식에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7 ▶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1)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

노인복지센터의 온천욕프로그램 또는 수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노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함.

(2) 단위학교 체험학습활동에 관용차량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위학교에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감소와 학교예산 절감을 위해

교통편의(버스제공)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에 따른 행위로 보아 가능함.

(3) 노인건강교실 참여노인에게 관용차량 제공

노인건강교육을 위한 교육장까지의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에 부수된 행위로서 가능함.

(4)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됨.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자에게 관용차량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회의장소와 국민통일공감대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함.

8 ▶ 각종 공모

(1) 자원재활용 아이디어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재활용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함.

(2) 랜드마크(landmark) 소재 공모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 도시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장 및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함.



(3) 도심 재정비사업 국제현상공모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시의 재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가능함.

(4) TBS TV서울의 시민영상공모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개국한 케이블TV 채널인 'TBS TV서울'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제작 영상물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상패 및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함.

(5) 사진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보아 우수작품 제출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단순한 행사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음.

(6) 민방위 표어·포스터·수필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표어·포스터·수필 등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는 있으나 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행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주민들의 산불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현수막·입간판 등에 활용할 표어·포스터·등을 현상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볼 수 있음.



VI

부 록



부록

관련 법규정 등

공직선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삭제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11.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크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④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8.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1호, 2018.1.19., 일부개정]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삭제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사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⑤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삭제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예비후보자
 -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⑥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⑦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제1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별표 2] <신설 2015.4.1.>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나. 다른 지방의회·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명함·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 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국·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취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및 식사 제공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부록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1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

2 ▶ 기본지침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

3 ▶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 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군·구에 시달 함
-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등 기본과제는 「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진흥시책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정한 것이며, 사업예시는 세부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

-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활성화
-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
- 역 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 사업예시

- 지역별 대표상설 공연예술행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전문 예술단체·법인 지정 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 아트마켓 운영 지원, 공립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바우처 활성화, 문화행사 DB구축 및 평가모델 개발 등
- 지역주민 대상 무료 문화예술프로그램,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의 각종 예술제, 다중 밀집지역 상설공연,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순회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 공연행사, 무료영화 상영회,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전통 재현행사 등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 사업예시

-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화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 시설화 추진 등
-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도서관·시군 구민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전시행사 등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 사업예시

-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축제·산업축제·특수 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계기별 축제, 생태자연 축제, 향토역사 관광축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

-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업예시

-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 체육시설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 동호인클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형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
- 지역 산·학·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
-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 사업예시

- 문화콘텐츠 제작·수출·마케팅지원, 영상물 제작 등 교육 지원, 다큐멘터리·단편영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지원
-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 도서·출판 전시회 등

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

-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결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는 아래와 같음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80일(선거일전 18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나. 위 ‘가’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 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장소·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항목 기준

- 장소·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
-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
 ex) 전년도 2/4분기에 20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

6 참고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2010.1)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관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 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함.

붙임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문화·체육·관광 등 관련법령 발취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연법

-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전 화 | (02) 503-9675

디자인 및 제작 | 티엔엘커뮤니케이션